



2026-08-24

(26-5888)

페이지: 1/2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원문: 영어

통보

제 10.6 조에 따라 다음 통보문을 회람한다.

1.	통보국가: <u>태국</u> 해당되는 경우, 관련 지방정부의 명칭(제 3.2 조 및 제 7.2 조):
2.	담당기관: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국(OCPB)
3.	근거 조항 제 2.9.2 조 [X], 제 2.10.1 조 [], 제 5.6.2 조 [], 제 5.7.1 조 [], 제 3.2 조 [], 제 7.2 조 [], 기타:
4.	해당 제품(HS 코드 또는 국가 관세 분류 번호.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 태양광 패널
5.	통보 문서의 세부 사항(제목, 페이지 수, 접근 방법): 태양광 패널을 표시규제 대상 상품으로 규정하는 것에 관한 표시위원회 고시안 (3 페이지, 태국어)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의 통보 문서 및/또는 연락처 링크: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6/TBT/THA/26_04389_00_x.pdf WTO/TBT 질의처 및 통보기관 태국산업표준원(TISI), 산업부 전화: (662)430 6831 내선. 2130 팩스: (662)354 3041 이메일: thaitbt@tisi.mail.go.th 웹사이트: https://www.tisi.go.th
6.	내용: 본 고시안은 태양광 패널을 표시규제 대상 상품으로 규정한다. 표시규제 대상 상품의 라벨에는 적절한 문구, 그림, 도안 또는 이미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상품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오해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되고, 태국어 또는 태국어를 병기한 외국어로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규제 대상 상품의 라벨 규정은 수출용으로 제조되어 태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표시규제 대상 상품의 라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목적 및 근거(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 소비자 정보 제공, 라벨링; 기만적 관행방지 및 소비자보호;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
8.	관련 문서: 소비자보호법 B.E. 2522(1979) 및 그 개정법
9.	채택 예정일: 추후 결정 시행 예정일: 관보 공표일로부터 60 일 경과 후
10.	의견 제공 의견 마감일: 2026-09-08 (통보일로부터 15 일) 통보일로부터 60 일 [] 해당 통보와 관련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WTO/TBT 질의처 및 통보기관 태국산업표준원(TISI), 산업부 전화: (662)430 6831 내선. 2130 팩스: (662)354 3041 이메일: thaitbt@tisi.mail.go.th 웹사이트: https://www.tisi.go.th